

## 「지수플러스 정기예금」 특약

### 제1조 적용범위

지수플러스 정기예금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『예금거래 기본약관』 및 『거치식예금 약관』을 적용합니다.

### 제2조 예금과목

이 예금은 정기예금으로 합니다.

### 제3조 용어의 정의

- ① 본 약관에서 "지수"라 함은 주가, 환율, 금리 및 금융시장에서 통용 가능한 지수 등 예금가입시 은행이 지정하는 시장지수를 의미합니다.
- ② 본 약관에서 "기준지수"라 함은 예금가입 시에 은행과 고객이 해당 예금거래에 적용되는 "최초" 시장 지수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지수를 의미합니다.
- ③ 본 약관에서 "결정지수"라 함은 예금가입 시에 은행과 고객이 해당 예금거래에 적용되는 "만기" 시장 지수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지수를 의미합니다.
- ④ "최초"와 "만기"는 지수 비교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, 예금의 신규일과 만기일과는 다를 수 있으며, "기준지수"와 "결정지수"는 예금가입 시에 은행과 고객이 정함에 따라 복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

### 제4조 상품의 종류

이 예금은 「지수상승형」, 「지수하락형」, 「지수안정형」, 「지수혼합형」 4종류가 있으며, 가입시 지정한 상품종류 사이의 전환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

1. 지수상승형 : 예금가입기간 중 지정한 시점사이에 "지수"가 상승하는 경우 예금의 만기이율이 상승
2. 지수하락형 : 예금가입기간 중 지정한 시점사이에 "지수"가 하락하는 경우 예금의 만기이율이 상승
3. 지수안정형 : 예금가입기간 중 지정한 시점사이에 "지수"가 은행이 정한 일정범위를 유지하는 경우 예금의 만기이율이 상승
4. 지수혼합형 : 예금가입기간 중 "지수" 비교 시점을 복수로 지정하여, 각 시점 사이를 "지수상승형", "지수하락형", "지수안정형"으로 각각 적용하여 각 시점 이율의 평균 혹은 합계를 만기 이율로 결정하거나, 예금가입기간 중 지정한 시점 사이에 "지수상승형"과 "지수하락형" 또는 "지수안정형"을 동시에 적용하여 만기시점 이율의 합계 혹은 최고이율 등을 만기이율로 결정

### 제5조 이자율 결정방식(시기) 분류

이 예금의 이자율 결정방식은 「시점지정형」, 「기간지정형」, 「복합지정형」 3종류가 있으며, 가입시 지정한 이자율 결정방식 사이의 전환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

1. 시점지정형: "기준지수"와 "결정지수"만의 "지수"를 비교하여 이자율을 결정
2. 기간지정형: "기준지수"의 기준일과 "결정지수"의 기준일 사이 기간 동안의 "지수"에 따라서 이자율을 결정

3. 복합지정형 : "기준지수"와 "결정지수"의 "지수"를 비교하여 이자율을 결정하되, "기준지수"의 기준일과 "결정지수"의 기준일 사이 기간 동안의 "지수"가 일정 수준이 되면, 그 "지수"에 따라서 이자율 결정(시점 및 기간 복합지정)

#### 제6조 이자율의 적용

- ① 이 예금의 이자율은 예금 가입일 당시 은행이 게시한 "금리표"상의 지수 변동에 대응하여 적용되며, "적용 금리표"는 예금가입 후 손님에게 별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.
- ② 예금가입일 당시 은행이 게시한 "금리표"상에 정해진 바에 따라, 지수변동에 의해 "이자율 0% (무이자)"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- ③ 청약기간(청약시점과 신규일 이전)과 만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지급 여부 및 이율은 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- ④ 이 예금의 이율은 법령에 의거한 최고이자율의 변경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응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#### 제7조 가입기간 및 최저 가입금액

이 예금의 가입기간 및 최저가입금액은 은행이 별도로 정하여 게시합니다.

#### 제8조 이자계산

이 예금의 이자계산은 1년을 365일로 하여, 제6조에 의한 이자율을 예금가입일수에 대하여 계산하여 드립니다.

#### 제9조 중도해지

이 예금의 중도해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.

단, 손님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응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은행은 "예금가입시점"에 정해진 중도해지 수수료를 중도해지금액에서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.

#### 제10조 원천징수

본 예금의 만기시 이자부분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은 원금을 상회하는 이자지급액 전액에 대하여 계산됩니다.

#### 제11조 신의성실의 원칙

천재지변, 법령, 기준지수 및 동 지수 제공자의 중요한 변경, 동 지수의 계산 및 고시의 제한, 기타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하여 지수 및 관련거래가 제한되거나 중지되는 경우에는, 은행이 신의성실 원칙하에 지수, 약정금리 및 그 지급시기 등을 정하기로 합니다.

<부칙>

이 특약은 2016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.